

#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제정 2004. 9.03  
개정 2011. 7.12  
2014. 1.28  
2019. 6.1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단의 선정,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단”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간 대규모로 집중지원하여 성과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사업단 사무국”이라 함은 사업단에 관련된 연구관리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단 본부과제(이하 “본부과제”라 한다)”라 함은 사업단 전체 목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단장이 주관하는 핵심연구과제를 말한다.
4. “사업단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라 함은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공모·선정하여 각 세부기관별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모든 사업단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단과 사업단장의 선정,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 세부과제의 기획·선정·평가 및 관리 등과 관련되는 사항에 적용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수행능력·경영관리능력·사업단 총괄연구계획 등 사업단 연구·운영계획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확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사업단장의 선정 및 사업단의 구성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단, 별표의 사항은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거나,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업의 연구결과의 보급 및 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 세부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관리기법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 세부과제의 논문,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단 사무국조직 직원의 지휘·감독과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사업의 전주기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및 본부과제의 수행
8. 기타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보

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된 책임급(부교수급) 이상의 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며,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업단 점검·관리)** ① 진흥원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또는 평가 등을 통해 사업단의 업무를 점검·관리할 수 있다.

- 1. 사업단 과제기획 및 과제관리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 2. 평가 계획 및 절차의 타당성 검토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3. 관련규정 준수여부,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또는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사업의 연구·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단의 조직)**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단장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직원을 임명하여 사무국을 구성한다.
- ③ 사업단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별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단의 기본 사업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본부과제, 세부과제의 기획·공모·선정 및 연구성과의 종합평가 등 사업추진과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3.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⑤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를 참조하여 자체 규정으로 정하되, 이에 대하여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단의 운영·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년도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한 예산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라 한다)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세부과제 선정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해당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 제3장 사업관리

**제9조(세부과제의 선정)**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시 관련 법령 및 사업단의 제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부과제 내에서는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으며, 세부과제의 지원규모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세부과제의 과제협약)** ① 진흥원장은 사업단 확정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의 선정 결과 및 향후 사업단 세부 운영계획에 관하여 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세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과제의 평가)**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자체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12조 <삭 제>**

**제13조(연구비 산정)** ① 사업단장은 본부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정 시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단, 본부과제에서 과제관리비나 간접비는 계상할 수 없다.

② 사업단장은 본부과제에서 사업단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으나, 단 사업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세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단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과 사업단 운영비 및 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감사보고서)에 따라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사업단 평가 및 성과관리

**제15조(사업단의 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① 사업단의 중간(연차·단계) 및 최종 평가는 평가지침을 따른다.

② 진흥원장은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위하여 사업단의 연구 실적과 목표달성도를 심층분석한 성과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활용한다. 단,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 성과가 불량할 경우 사업단장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질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 부 칙 <2019. 6.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정기한)** 모든 사업단은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단 구성 및 지침 등을 이 지침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 관리지침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제7조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유관기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진흥본부장과 사업단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진흥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및 추천기관에서의 직책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심의·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단의 기본 사업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본부과제, 세부과제의 기획·공모·선정 및 연구성과의 종합평가 등 사업추진과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3.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서면 및 이메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 3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결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서면의결)** ① 제3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의결할 경우 재적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서면의결의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록)**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경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 사업단 업무별 진흥원장 승인 및 보고사항

업무구분	세부 구분	내용	승인/보고
사업단운영	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변경 관련 사항(「운영위원회 관리지침」 제2조제3항)	승인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위원회 구성 및 변경 관련 사항	보고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제규정	사업단 자체 규정 및 지침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승인
	사업단장	사업단장 선정 이후, 타 사업 참여사항	승인
		사업단 특성에 따른 사업단장 인건비 계상 관련 사항	승인
	연구협력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보고
	운영비	사업단 운영계획(안) ※ 사업단 1차년도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시 제출하여야 함	승인
		사업단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보고
	결산	사업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사업시행계획		사업단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승인
세부과제 평가	평가계획	평가계획(안)	승인
		과제평가단 구성(선정평가에 한함)	승인
	평가결과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
세부과제 관리	협약변경	협약변경 처리 결과	보고
	성과	사업단 성과 홍보 전 해당 내용 보고	보고
	제재요청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제재조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진흥원은 보고된 사안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요청함	보고